



2024년분

# 연말조정에 대하여

국세청 팸플릿 「2024년 연말 조정의 방법」을 바탕으로 작성

## 연말조정이란 무엇인가요?

급여의 지불자는, 매월(매일)의 급여지불시에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세액의 1년간의 합계액은, 급여의 지불을 받는 사람의 연간 급여 총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연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정산하기 위해, 1년간의 급여 총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올바르게 계산해, 그때까지 징수된 세액과의 과부족액을 징수 또는 환급해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정산 절차를 '연말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무처에서 연말조정에 의해 세액의 정산이 끝나는 경우 스스로 확정신고등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연말조정은 원칙적으로 급여의 지불자에게 「급여소득자 부양공제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람 전원이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 (예) 다음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

1. 1년에 걸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연도 중에 해외 지점으로 전근한 사실 등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
3.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연도 중 퇴직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사망으로 퇴직한 사람
  - 현저한 심신장애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시기로 보아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12월 중에 지급기가 오는 급여를 받고 퇴직한 사람
  - 이른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등이 퇴직한 경우로서 올해 중 지급받을 급여의 총액이 103만엔 이하인 사람

###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예) 다음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

1.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열거된 사람 중 연도 중 주된 급여의 수입금액이 2000만엔을 초과하는 사람
2. 2곳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급여의 지급자에게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혹은 연말정산을 할 때까지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3.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4)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비거주자
5.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이른바 일용근로자 등

**주의 :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조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연말조정은 연도 중에 마지막으로 급여 지급을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11월경부터 시작하여 보통 12월에 진행됩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은 사용자에게 확인해주세요.



## 연말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연말조정시, 급여지급자에게 신고서 등을 토대로 기초공제와 부양공제, 한부모공제, 생명보험료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각종 신고서의 다국어 버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신고서(부양공제 등 신고서 등)

<https://www.nta.go.jp/users/gensen/nencho/shinkokusyo/gaikokugo.htm>

언어 :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부양공제 등의 적용을 받는 분에게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gaikokugo/02.htm>

언어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 정액 감세를 위한 신고서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gensen/teigaku/sinkokushorei\\_gaikokugo.htm](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gensen/teigaku/sinkokushorei_gaikokugo.htm)

언어 :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 일본의 급여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요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gaikokugo/07.htm>

언어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 조세조약에 대하여

출신국가와 일본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는 연말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세등이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와 「조세 조약에 관한 원천 징수 세액의 환급 청구서(양식 11)」를 급여 지불자를 경유해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세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